[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2.6.29>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자동차 등록번호			차 종	
차 명			형 식 및 연 식	
차 대 번 호			원 동 기 형 식	
사 용 본 거 지				
소유자	성명(명칭)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임시검사 에 합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5호 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에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령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차령 연장조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까지,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